# 답 변 서

사 건 2025드단22521 이혼 등

원 고 최 남 회

피 고 김경랑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 1. 청구원인 진술 중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 이혼을 원치 않고 있는 심정의 토로

가. 소장 부본의 1항. 기재 '당사자 관계' 항목에 기재된 사실관계는 당연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2항. 이후의 원고 주장의 상당 부분에 대하여 부인하는 바 입니다.

무엇보다도 결정적으로 피고는 원고와의 이혼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 피고는 소장을 송달받고서도 진정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 맞는지 몇 번을 읽어보고 또 읽어보았을 정도로 피고 사이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만큼의 심각하거나 큰 갈등은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다. 물론 피고가 원고와의 혼인생활에 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원고를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과 달리, 원고는 피고에 대한 크고 작은 분노나불만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 하지만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마음에는 변함이 없고,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부부가 함께 할 날들을 위하여 반성할 점은 반성하고 개선할점은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으며, 다시금 부부 화합을 위한 과정을 거칠 모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2.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 전반의 사정에 대하여

가. 단란하고 화목했던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

원고와 피고는 이미 오랜 기간 서로를 알고 지내던 사이에서 관계가 발전되어 혼인에 이르렀기에 서로의 성격도, 취향도 잘 알고 있어 더욱 마음이 잘 맞았고,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내었습니다.

비록 비교적 늦은 나이에 혼인을 하여 깊게 소망하던 자녀를 가지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내 함께 극복하고서 반려견과 함께 평범하지만 행복한 혼인생활을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나. 원고의 투병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 후부터 현재까지 건강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원고는 전립선에 암일 확률이 매우 높은 혹이 여러 개 있어 늘 정기적인 검진과 평소 식단, 생활습관이 매우 중요하였고, 선종도 여러 개 발견되어 제거하는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건강을 위해 혼인생활동안 배달음식이나 냉동식품은 일절 구매하지 않았고, 매번 각종 항암음식을 직접 만드는 등 원고의 식이요법, 식단관리, 운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다. 원고의 정신과적 질환



원고는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과적으로도 원고의 상태에 대한 진단 및 치료 이력이 있을 정도로 정신적 건강 또한 좋은 상황이 아니었기에 타인에 비해 작은 일에도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회피하며 감정조절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원고의 정신과적 질환과 성격으로 인하여 직장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일이 빈번하여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직장동료와의 큰 다툼으로 징계위 원회에 회부된 적도 있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정신적으로 힘들어 할 때면 언제나 원고의 편이 되어주었고, 새로운 직장을 알아볼 때에도 원고의 성격이나 적성에 맞는 직장을 알아보며 해외취업을 위한 화상면접까지 함께 호흡을 맞추며 연습하는 등 원고가 경제 활동을 문제없이 해낼 수 있도록 백방으로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라. 피고의 노력으로 인한 원고 상황의 개선

피고가 원고의 건강을 위해 늘 건강식 위주의 밥상을 차려주고, 무조건적인 원고의 편이 되어 직장생활을 잘 해낼 수 있도록 노력한 만큼 원고는 데이터 베이스 업무, 해외업무 경력 등 새로운 스펙을 쌓아 경제활동에 있어 소득을 높일 수 있었고, 원고의 건강 또한 암 수치 검사가 1년 후로 유보될 만큼 많 이 개선되었습니다.

#### 3. 원고의 일방적인 이혼통보

가. 피고는, 원고에게 이혼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으므로 2025. 4. 12. 이혼



의사가 합치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나. 원고가 2025. 4. 12. 집에서 나간 것은 근무지 기숙사로 복귀하기 위해 필요한 짐을 꾸려야 하는 상황이었을 뿐, 피고와의 이혼을 위한 별거였다는 사 실은 피고로서는 전혀 알지 못했던 일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짐을 챙긴 것이 단순히 기숙사 복귀로만 알고 있었고, 원고 또한 피고와 싸우거나 이혼을 언급하며 집에서 나간 것이 아니었기에 집에서 나간 이후에도 평소처럼 연락하며 피고와 주말에 만나자는 약속을 잡거나, 반려견을 서로 언제 돌볼 지에 대한 일정을 잡기도 하였습니다.

다. 피고는 이후 원고의 갑작스러운 연락두절과 이 사건 소장을 받고서야 원고가 피고와의 이혼 의사가 있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라. 피고는 원고의 갑작스러운 이혼 통보로 인하여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허망함으로 급격한 체중 감량이 올 정도로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있습 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회피적인 성향과 평소의 성격으로 미루어 볼 때 원고가 외부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피고와의 연락 일체를 차단하고 이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극단적 생각에 휘둘려 스스로를 가두고 있다는 생각에 원고의 건강에 대한 걱정 역시 너무나 큰 상황입니다.

#### 4. 법률상 이혼사유의 부존재



수원 사장법은 2025 한 2025 전 2025 전

상기한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에서의 진술과 같이 혼인

을 파탄에 이르게 하였거나 서로 이혼의 의사가 합치된 사실이 존재하지 않습

니다.

만일 재판상 이혼 사유로서 이혼청구 인용이 될 만한 이혼 사유는 없다는 가

정을 할지라도,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와의 관계 회복을 원치 않는 사유'가 있

다고 한다면, 피고는 원고를 끊임없이 설득하여 원고의 마음을 돌려놓을 수 있

도록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피고의 심경이 위와 같기에 피고는 이혼만은 원치 않는 바이며, 원고가 가정

으로 돌아 와 본 사건의 절차가 원만하게 종결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

다.

5. 결 론

피고의 심경이 위와 같사오니, 변론 혹은 조정 절차 이외의 절차인 부부상담

절차의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신다면, 부부 상담 절차를 통하여 피고

는 원고와의 관계를 다시 예전처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가 있다면 부부상담 절차 등

을 통하여 원고의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를 원하며, 원고가

받은 상처의 많은 부분이 치유될 수 있다면 피고는 어떠한 협조와 심리적 독

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원고와 피고의 소중한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8. 28.

 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늘 품

 담당변호사 천 성 훈

 최 지 혁

 정 수 연

수원가정법원 가사4단독 귀중